

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19. 8. .
제 안 자 : 김은영 의원

1. 수정이유

-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 중 상위법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들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시장의 인정 취소,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절차 등 조항 일부 수정(안 제2조의2제2항, 제9조의2제2항, 제9조의3제2항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2제2항 중 “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”를 “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2제2항 중 “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”를 “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3제2항 중 “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”를 “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① 하남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, <u>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2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, 「<u>행정절차법</u>」 <u>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9조의2(상인회 등록 취소) ① 하남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, <u>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9조의2 (상인회 등록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, 「<u>행정절차법</u>」 <u>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9조의3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하남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, <u>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9조의3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, 「<u>행정절차법</u>」 <u>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.</u></p>

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8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,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인정 취소,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절차 등 신설(안 제2조의2, 안제9조의2 및 안9조의3)
- 나.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예 관한 갱신히트 및 조건 신설(안 제7조의2)
- 다.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규정 마련(안 제8조의2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. 7. 5. ~ 2019. 7. 15.(10일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소상공인과

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① 하남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,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

제5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.

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)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한다.

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8조의2(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)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를 요청할 경우 하남시장은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,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여부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)” 을 “(상인회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하남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제9조제2항(중전의 제1항) 중 “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” 을 “등록한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 을 “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 (상인회 등록 취소) ① 하남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,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

제9조의3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하남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,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일자리경제과장 김 희 태
	팀장 직위·성명	지역경제팀장 정주연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박대환 (790-5642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2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①</u> <u>하남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,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</u></p>
<u>제5조</u> (생략)	<u>제8조</u> (현행 제5조와 같음)
<u>제6조 ~ 제8조</u> (생략)	<u>제5조 ~ 제7조</u> (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)
<신 설>	<p><u>제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) ①</u> <u>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</u></p>
<신 설>	<p><u>제8조의2(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) ①</u> <u>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를 요청할 경우 하남시장은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, 공청회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리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,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</u></p>